[독일] 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박희영*

검색엔진 제공자인 독일 야후는 검색 결과에 기사를 노출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 배경

○ 독일은 신문사나 잡지사(이하 '언론출판사')가 제공하는 언론출판물[1]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2013년 8월 1일부터 도입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접근권(우리의 전송권에 해당)만 인정하고 있음.

○ 언론출판물의 일부 단어나 최소한의 문단을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에는 공중접근권의 예외 사유로서 허용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이 발간된 지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한 이유는 검색엔진 제공자나 뉴스 애그리게이터 제공자와 같이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사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임.

---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언론출판물이란 언론출판사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도화를 편집과정을 거쳐 기술적으로 고정한 것으로서 특정 매체에 특정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축적된 출판물을 말하며 이는 정보의 전달이나 의사의 형성 또는 엔터테인먼트에 기여해야 함.



□ 헌법소원 청구 및 청구인의 주장

○ 헌법소원 청구인은 독일 야후 운영자인데 검색 결과 목록에 노출된 기사의 내용이 저작인접권의 예외 사유(일부 단어나 최소한의 문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은 기본법(독일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청구인은 라이선스 계약 없이 언론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쟁송 수단을 거치게 되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0일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2)]

-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이전에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쟁송 수단을 거쳐야 함.

○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언론출판물의 이용으로 인한 언론출판사의 부작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서 통상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의한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특허청 중재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언론출판사의 보호 이익과 충돌하는 검색엔진 제공자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권 사이에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우선되는 이익을

2) BVerfG Beschluss vom 10.Okt.2016 - 1 BvR 2136/14.



정해야 하고 제공자의 기본권이 비례성 원칙에 벗어나게 제한해서는 안 됨. 또한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검색엔진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 언론출판물을 포함하여 정보를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엔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언론출판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은 검색엔진이 자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출판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검색엔진 제공자가 즉시 인식할 수 없다는 점과 개별 사례에서 검색엔진에 대한 수동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원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청구인에게 기대될 수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이 '언론출판물'의 개념이나 '최소한의 문단'의 범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고 언론출판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은 형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본법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청구인은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 쟁송 수단을 거치게 되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환청구를 통해서 지불한 보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이유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인용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아서 각하되었지만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언론출판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과 정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검색엔진의 의미도 함께 고려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 특히 검색엔진 제공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최소한의 문단'을 25자 이하의 단어로 해석한 2016년 7월 14일자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3]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2017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차원의 저작인접권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QuK4i
* http://bit.ly/2fZTbKZ
* http://bit.ly/2gVtGPr
* http://bit.ly/2gDfkCw

[3] OLG München Urteil vom 14.07.2016 - 29 U 953/16(이 판결에 대한 소개는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참조).